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56호 2016. 03. 14.(월)

## 차 례

###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6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68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69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70호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2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71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7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3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7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4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7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51

⇒ 뒷면 계속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3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6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36호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4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354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6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369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중1-68 및 1-81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6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370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69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67호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서구”를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위탁 관리”를 “위탁·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거부시”를 “거부 시”로, “위탁관리”를 “위탁·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자중”를 “신청자 중”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천광역시 서구”를 “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마을주민이외”를 “마을주민 이외”로 한다.

제5조 중 “만료시는”을 “만료 시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타수입”을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월전

까지 구청장에게 년간”을 “4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과후 1월이내”를 “경과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제7조제1항의 “공무원 기능8등급 상당”을 “일반직 공무원 8급 상당”으로 수정하며, 제2항 중 “선원의 인건비는 「인천광역시 서구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선원의 인건비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익월5일전까지”를 “익월 5일 전까지”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정서진호의 운항일지**

년 월 일

선박명	정서진호	선박소유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출항지		도착지		
출항시간		도착시간		
승선인원		안전수칙 준수사항	1.승선인수 2.화물	
기 타 정비사항 (주유량)				
<b>승 선 자 명 부</b>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68호

###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를 “또는 가족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b>【증명,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b>			
<b>1. 일반행정분야</b>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	800원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	800원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	800원	
(5) 건설공시기성실적증명(물품, 용역)	1통당	300원	
(6) 선급금 정산확인원	"	300원	
(7) 공유재산 대부신청	1건당	신규 5,000원 (계속 3,000원)	
(8)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신청	1통당	600원	
<b>2. 문화관광체육분야</b>			
(1)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	20,000원	
(4)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8)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5,000원	
(9)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10)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1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60,000원	
(1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50,000원	
(1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30,000원	
(1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15,000원	
(1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 수수료	"	30,000원	
(16)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5,000원	
(1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	10,000원	

(18) 영화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19)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20)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	5,000원	
(2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2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23)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4)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26)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2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2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9)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3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31)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3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3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 교부 수수료	"	4,000원	
(36)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	100,000원	
(37)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사업계획 승인 수수료	"	50,000원	
(3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30,000원	
(39)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20,000원	
(40)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	50,000원	
(41)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등록신청 수수료	"	30,000원	
(42)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43)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44)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	30,000원	
(45)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b>3. 부동산중개업분야</b>			
(1)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	30,000원	
(3)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	800원	
(4)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	10,000원	

(5)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	800원	
(6)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등록인장 변경) 신고 수수료	"	0원	
(7)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	800원	
<b>4. 농수산업분야</b>			
(1)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	2,500원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수수료	"	9,000원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	7,500원	
(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	5,000원	
(5)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	1,000원	
(6)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5,000원	
(7)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8)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	30,000원	
(9)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10)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	1,000원	
(11)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	5,000원	
(12)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13)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	"	1,000원	
(14)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15)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800원	
(16)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	4,000원	
(17)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	2,500원	
(18)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19)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	1,000원	
(20)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1,000원	
(21)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1,000원	
(22)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	1,000원	
(23) 어업재개 신고 수수료	"	1,000원	
(24)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	1,000원	
(25)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26)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	4,500원	
(27)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	2,500원	
(28)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	4,500원	
(29)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	"	4,000원	
(30)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수료	"	4,000원	
(31)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	1,500원	

(32)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	2,000원	
(33)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	2,000원	
(34)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	2,000원	
(35) 어업 신고 수수료	"	1,500원	
(36)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	1,500원	
(37)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500원	
(38)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000원	
(39)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	800원	
(40)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	1,000원	
(41)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	800원	
(42)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	1,000원	
(43)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	3,000원	
(44)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	3,000원	
(45)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	2,000원	
(46)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	3,000원	
(47)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	3,000원	
(48)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4,500원	
(49)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50)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51)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	"	1,000원	
(52)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2,000원	
(53)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1,000원	
(54)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2,000원	
(55)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1,000원	
(56)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 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	1,000원	
(57)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3,000원	
(58)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800원	
(59)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	"	1,000원	
(60) 어획물 운반업 등록	"	5,500원	
(6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	500원	
(62)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 허가	"	1,000원	
(63)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 허가	"	500원	
(64)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건조발주허가, 변경 허가 포함)	"	1,600원	

(65)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서선의 개조허가(개조발주허가, 변경허가 포함)	"	800원	
(66) 어획물운반법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건조발주허가, 변경허가 포함)	"	2,000원	
(67) 어획물운반법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개조발주허가, 변경허가 포함)	"	1,000원	
<b>5. 공장설립분야</b>			
(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2)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	1,000원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	1,000원	
<b>6. 석유판매업분야</b>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	10,000원	
(4)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b>7. 환경분야</b>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	5,000원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	5,000원	
<b>8. 보건사회분야</b>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2)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3)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수수료	"	10,000원	
(4)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수수료	"	10,000원	
(5)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	40,000원	
(6)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	100,000원	
(7)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20,000원	
(8)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40,000원	
(9)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	40,000원	
(10)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	100,000원	
(11)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20,000원	
(12)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개설장소 이전에	"	40,000원	

<p><b>한정) 수수료</b></p> <p>(13)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p> <p>(14)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p> <p>(15) 안마시술소 개설신고</p> <p>(16)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p>	<p>”</p> <p>1통당</p> <p>1건당</p> <p>”</p>	<p>800원</p> <p>500원</p> <p>40,000원</p> <p>20,000원</p>	
<p><b>9. 도시계획분야</b></p> <p>(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p> <p>(2) 환지(예정지) 증명</p>	<p>1필지당</p> <p>1통당</p>	<p>1,000원 (컬러 1,500원)</p> <p>400원</p>	
<p><b>10. 교통행정분야</b></p> <p>(1)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p> <p>(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p> <p>(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p> <p>(4)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p> <p>(5)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원</p>	<p>1건당</p> <p>”</p> <p>”</p> <p>”</p> <p>”</p>	<p>6,000원</p> <p>1,500원</p> <p>1,500원</p> <p>1,500원</p> <p>1,000원</p>	
<p><b>11.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b></p> <p>(1) 주민등록 등본·초본</p> <p>(2) 토지(임야)대장</p> <p>(3) 집합건축물대지권등록부</p> <p>(4) 건축물관리대장</p> <p>(5) 개별공시지가확인원</p> <p>(6) 토지이용계획확인원</p> <p>(7) 세목별 과세증명</p> <p>(8) 자동차 등록원부(갑, 을)</p> <p>- 관내</p> <p>- 관외</p> <p>(9)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p> <p>- 관내</p> <p>- 관외</p> <p>(10) 농지원부</p> <p>(11) 가족관계등록부</p> <p>- 등록사항별 증명서</p> <p>(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p> <p>- 제적등본</p>	<p>1통</p> <p>1필지</p> <p>1장 초과마다</p> <p>1건</p> <p>1건</p> <p>1개년필지</p> <p>1필지 (칼러불가)</p> <p>1건</p> <p>1건</p> <p>1건</p> <p>1건</p> <p>1건</p> <p>1건</p> <p>1건</p> <p>1건</p>	<p>200원</p> <p>400원</p> <p>100원</p> <p>500원</p> <p>400원</p> <p>600원</p> <p>800원</p> <p>600원</p> <p>200원</p> <p>200원</p> <p>400원</p> <p><b>400원</b></p> <p>800원</p> <p>500원</p> <p>500원</p>	

- 제적초본	1건	300원	
(12) 검정고시증명서			
- 성적·합격증명서(국문·영문)	1건	무료	
- 과목 합격증명서	1건	무료	
(13) 초·중·고등학교 증명서			
- 성적증명서(중·고등학교)	1건	무료	
- 졸업증명서(초·중·고등학교)(국문·영문)	1건	무료	
- 학교 생활기록부(초·중·고등학교)	1건	무료	
- 제적증명서	1건	무료	
- 정원외관리증명서	1건	무료	
- 졸업예정증명서	1건	무료	
- 교육비납입증명서	1건	무료	
(14) 한부모 가족증명서	1건	무료	
(15) 장애인 가족증명서	1건	무료	
(16) 수급자 증명서	1건	무료	
(17) 병적증명서	1건	무료	
(18) 부동산 등기부 등본	1통	1,000원	
(19) 어선원부	1건	700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69호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 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규칙 10조”를 “시행규칙 제18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를 “법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익일06:00”를 “24:00”로, “배출하여야 한다.”를 “배출하고,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투입구에 수시로 배출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가정사업계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50ℓ:13kg이하, 100ℓ:25kg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로 제한한다.

제7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을 “따른 조치명령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쓰레기 제거조치
2. 주변환경 원상회복 조치
3. 그 밖에 청결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제9조의2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자동집하시설에 배출되는 쓰레기봉투는 인식 스티커를 추가 부착하여 제작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거”를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항 제2호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

제16조 삼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서구로 전입하는 가구에 한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전입신고시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인증스티커를 받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중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를 “과태료는 법 시행령 제34조의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한 관련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7은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8은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3]

쓰레기봉투의 규격별 종류(제10조 관련)

봉투용량(ℓ)	봉투규격(cm) (가로×세로)	종 류
5	26×46.5	일반용봉투(가연성)
10	33×56.5 36×53.5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
20	42×69.5 45×65.3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
30	48×78.5	가정사업계용봉투
50	56×91.5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b>공공용봉투</b>
60	50×97	가정사업계용봉투
100	71×113.5	일반용봉투(가연성) <b>공공용봉투</b>
125	80×120	가정사업계용봉투

※ 비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 봉투제작 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첫째자리에 반올림한다.

$$\text{여분의 길이(cm)} = \frac{\text{가로길이(cm)}}{\pi} + 5\text{cm}$$

## [별표4 ]

##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 ℓ )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1. 이 봉투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중 폐종이류, 나무조각류, 상품포장재 등 가연성(불에 타는)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에 불연성(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시간(20:00~24:00)에 배출하시고,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투입구에 배출하십시오.
4. 폐냉장고, 장롱 등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를, 매립 등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생활쓰레기는 가정사업계용봉투를 별도로 구입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재활용품은 화요일 20:00 ~ 24:00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 서구청 자원순환과(☎560-4391~5)

서구시설관리공단(☎580-1180~5)

공급원 :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제조원 : 업체명(☎ - )

## [ 별표4 ]

##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 ℓ )

-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용 -

1.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중 폐각류, 폐전구, 깨진그릇 등 불연성 (불에 타지 않는)쓰레기는 이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불연성 쓰레기를 버릴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시간 (20:00~24:00)에 배출하십시오.
4. 폐냉장고, 장롱 등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를, 매립 등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생활쓰레기는 가정사업계용봉투를 별도로 구입하여 처리 하여야 합니다.
5. 재활용품은 화요일 20:00~24:00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리배출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 서구청 **자원순환과**(☎560-4391~5)

**서구시설관리공단**(☎580-1180~5)

공급원 :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제조원 : 업체명(☎ - )

[ 별표4 ]

##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 ℓ )

- 가정사업계용 -

1. 이 봉투는 ○ ○ ○ 또는 ○ ○ ○에 신고하면 수거합니다.
2. 처리대상 쓰레기 (가정에서 발생된 사업계 쓰레기 중 가연성쓰레기)  
: 고무, 피혁, 섬유, 폐도배지, 양탄자, 보온재, 폐목재, 오폐수 등
3. 상기 쓰레기를 이 봉투에 버리지 않는 경우 일체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4.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 서구청 **자원순환과**(☎560-4391~5)

**서구시설관리공단**(☎580-1180~5)

공급원 :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제조원 : 업체명(☎ )

## [ 별표4 ]

##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 -

1. 상품을 담는데 사용 후 종량제봉투(불에 타는 쓰레기용)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2.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 서구청 자원순환과(☎560-4391~5)

서구시설관리공단(☎580-1180~5)

공급원 :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제조원 : 업체명(☎ )

[별표4]

##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공공용쓰레기봉투( ℓ )

1.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과**(☎560-43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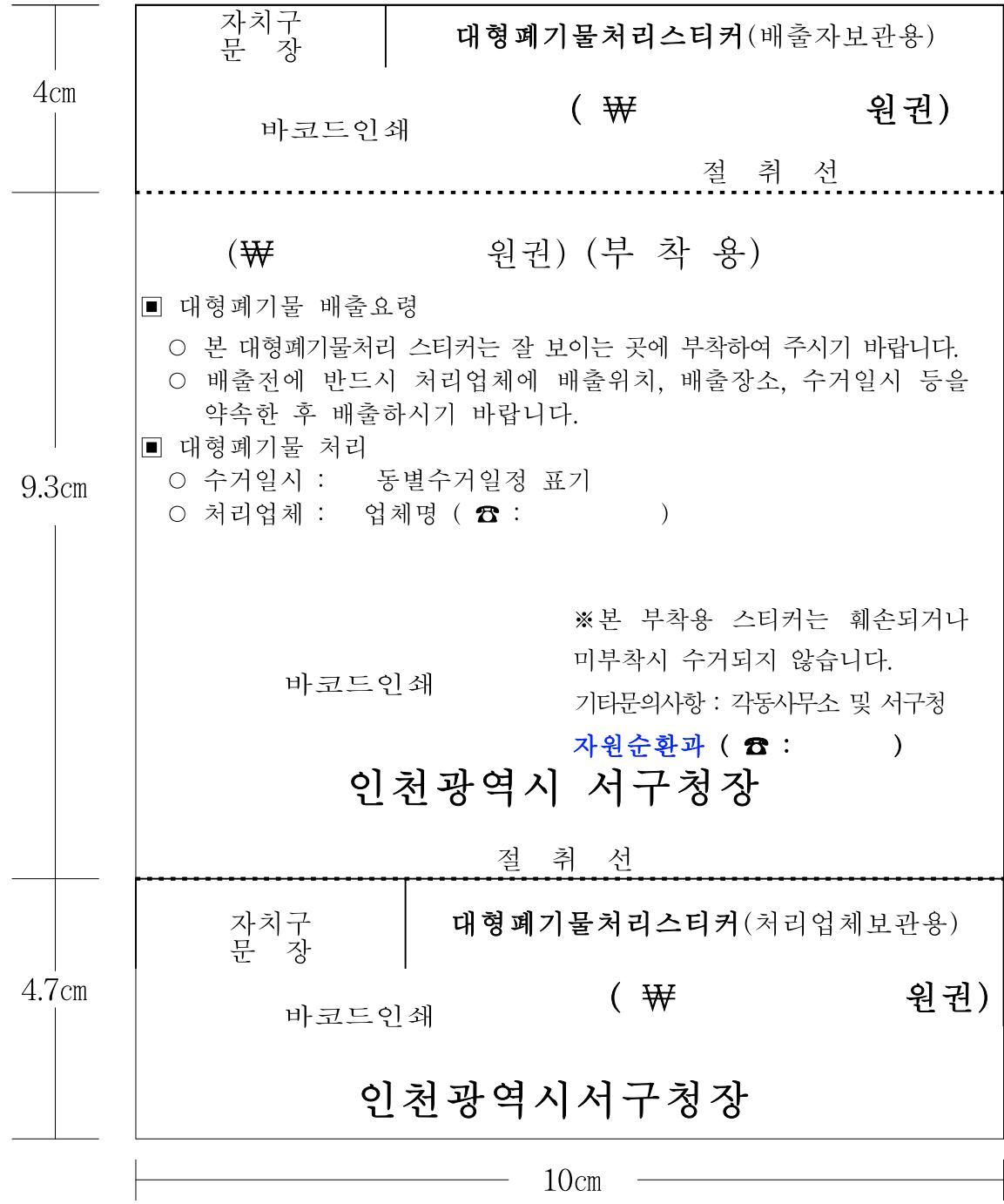
**서구시설관리공단**(☎580-1180~5)

공급원 :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제조원 : 업체명(☎ - )

[별표 5]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모형(제11조 관련)



※ 종류는 1,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4종으로 1,000원권은 파랑색 바탕에 흰글씨, 3,000원권은 초록색 바탕에 흰글씨, 5,000원권은 주황색 바탕에 흰글씨, 10,000원권은 붉은색 바탕에 흰글씨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 행위자	성명	주 소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과태료 금액	원		납부기간		납부장소				
위 반 일 시			위반내용						
위 반 법 률	폐기물관리법제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 .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생년월일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 × 118mm  
(인쇄용지 [특급] 34g/m<sup>2</sup>)

(을)							(피처분자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 행위자	성명	주 소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과태료 금액	원		납부기간		납부장소				
위 반 일 시			위반내용						
위 반 법 률	폐기물관리법제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 .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생년월일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 니 지정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 미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미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									

168mm × 118mm  
(인쇄용지 [특급] 34g/m<sup>2</sup>)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주 소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							

168mm × 118mm  
(인쇄용지 [특급] 34g/m<sup>2</sup>)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 행 번 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168mm × 118mm  
(인쇄용지 [특급] 34g/m<sup>2</sup>)

(무)							(인천광역시서구청통보용)	
과태료 납부 영수필 통지서								
발 행 번 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귀하				

168mm × 118mm  
(인쇄용지 [특급] 34g/m<sup>2</sup>)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수 신

발 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폐기물관리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	①성 명		②생년월일	
에대한이의	③주 소			
제 기 자				
과 태 료	④고지일자		⑤과 태 료 금 액	
처 분내 역	⑥부과기간		⑦이 의 제기일자	

첨 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70호

###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교육프로그램 개발·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종합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서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채용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수탁자·발달장애인단체·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홍보사업)**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71호

###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하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를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구 예산중”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 중”으로 하며, “매회계년도”를 “회계연도”으로 하고, “0.5%이상”을 “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비중”을 “경비 중”로 하고, “호와 같다”를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 중 “보조대상사업”을 “보조사업 대상”로 하고,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을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으로 하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중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2명
3. 구에 연고가 있는 교육공무원 : 2명
4.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구에 연고가 있으며, 교육사업에 열의를 가진 사람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중 “통할”를 “총괄”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교육여건개선 방안 강구”를 “교육여건 개선방안 강구”으로 하며, 제2호 “교육여건개선 경비보조금 신청사업계획 심의”를 “교육여건 개선 경비보조금 신청 사업계획 심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교육여건개선 사업”을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 하며,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집행 시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고,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삭제한다.

제8조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 비치하여야”를 “작성·비치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4. 그 밖의 사항

제9조제1항 중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매년 8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제7조 제2호”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제7조제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대상사업”을 “보조사업 대상”으로 하며, “확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여하여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보조사업 대상”으로 하고, “대상학교”를 “해당 학교”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대상”을 “해당”으로 하고, “사업계획서와 함께 보조금 신청서에 의거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한다.”를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후”를 “신청서 등을 검토 후”로 하고, “대상학교”를 “해당 학교”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 및”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

조에 관한 규정」과”로 하고,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을 “조례」를”으로 한다.  
제14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72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하수개발·이용자”란 법 제7조( 13조”를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3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5조”를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5조”로, “단서의 규정”을 “단서”로, “시설에 대하여는”을 “시설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영 제29조제1항”을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질규칙”을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전시”를 “전시 및”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지하수관련”을 “지하수 관련”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를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제11조의2제1항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에서 정하는 바에”를 “을”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제8호”를 “제10호”로 한다.

제14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제1호 중 “100%”를 “1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를 “100퍼센트”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부과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7조 중 “100분의 5에”를 “3퍼센트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부과징수에 관하여”를 “부과징수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하고 자 할 때에는”을 “할 때는”으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제44조제3항”을 “제44조”로, “8의”를 “7의”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부과할 때는”으로, “또는 서면에 의하여”를 “또는 서면으로”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관할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5조 중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을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제2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과태료 처분 통지서

시 행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하수법」 제○조제○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조에 따라 금○○○○○○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부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체납액				
위반사항				
과태료체납액	금 (₩	원 )	당초납부기일	
<p>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해당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p>				



(별지 제5호서식)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지서

시 행 :

수 신 :

발 신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하수법」 제41조와 관련입니다.

2.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이의제기일자		이의제기 사유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1부.  
2.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73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

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 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할 수 있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사업의 폐업,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게 구청장 포상
3. 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5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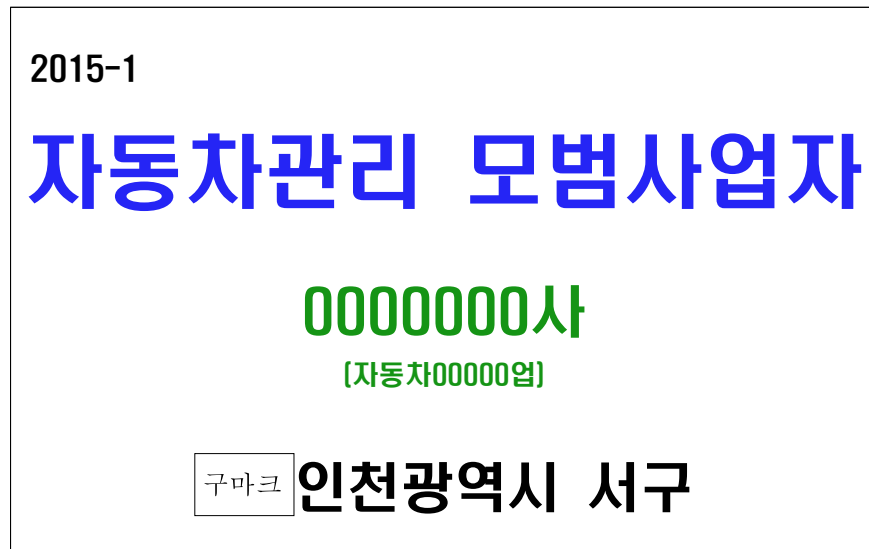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50cm(가로)×30cm(세로)

나. 재질 : 스테인레스판 실크인쇄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 안



나. 색상

○ 바탕 : 은회색

○ 글씨 : “자동차관리 모범사업자”는 청색, 상호는 녹색, 그 외는 흑색

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 상징 등의 문양을 넣을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 제            호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 업체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업    종 :
- 유효기간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직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74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를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로 한다.

제2조 중 “대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대상자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과태료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을 따른다”를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별표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

는”을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로, “의거”를 “따라”로, “과태료처분대상자”를 “과태료처분 대상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을 “또는 정보통신망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2조에 따라”로,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를 “부과할 때는 해당”으로, “제3호서식에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부과징수결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한다.”를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발부일로부터”를 “발부일부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발부”를 “제5호서식으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날로부터 30일”을 “날부터 60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관할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제10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지방세법」에 이를 준용한다”를 “「지방세기본법」을 따른다”로 한다.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7호서식, 별지 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별 표 】

## ■ 과태료부과기준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전의 처분은 양도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법 제23조 및 제34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9조 및 제34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처 분 사 전 통 지 서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 견 제 출	기 관 명		부서명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기 한	년 월 일				시까지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뒷면]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보건행정팀 전화 560-50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 과태료부과징수결정 통지서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제목: 과태료부과징수결정 통지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귀하께서는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본·지점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제        호				
과태료처 분	기관명칭			
	개설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반사항	관련조항		위반내용	
	부과근거			
과태료금 액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인천지방법원 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 임: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b>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b> </div>				

(별지 제5호서식)

##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부의무자	기 관 명			
	성 명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납 부 통지서번호				
금 액		당초납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에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수 신 : 지방법원장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6조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 으로 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 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부과내역	납 부 통지일자		금 액	원
	부과관청		이의제기일자	
처분내역 및 불복사유	처분사유			
	본인의 불복사유			
<p>붙임 1)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사본 1부.</p> <p>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사본 1부. 끝.</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청장</p>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35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 11.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가현로97번길 6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3. 11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6-03-1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지구35블럭2-1로트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97번길 6 (마전동)	2008-12-31	가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33-16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5로 57 (오류동)	2012-10-25	도담로에서 다섯번째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76-10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76-27 (원창동)	2009-09-22	인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82-4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8로 13 (오류동, (주)세인트앤엘 인천아라뱃길 물류센터)	2012-10-25	우리구 해넘이 명소 정서진 명칭을 반영한 정서진로에서 분기되는 여덟번째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622-14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908-120 (불로동)	2009-09-22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6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698-5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908-50 (불로동)	2009-09-22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인천광역시서구청시 제2016 - 36호

##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 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03. 14.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II. 지구단위계획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 · 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단독주택용지(A-1)

가구번호	기정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변경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91	1	4070.9	13획지 분할	91	1-1	334.6	
					1-2	334.0	
					1-3	332.5	
					1-4	331.1	
					1-5	329.6	
					1-6	367.6	
					1-7	387.2	
					1-8	328.0	
					1-9	328.0	
					1-10	328.0	
					1-11	328.0	
					1-12	342.3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91	1	분할가능선의 변경 및 분할	적정규모 획지분할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계재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제2016 - 354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기에
2.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6. 3. 9.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6. 3. 9. ~ 2016. 3. 24.(15일간)

□ 공고내용

1. 행정처분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등록번호	59오8891	45구9430	20부6884	53소9993	27무2942
	차명	에쿠스(EQUUS)	A5 Sportback 35 TDI quattro	BMW X5 3.0si	E200 K	SM5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명	교통민원과	
		주소	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 032-560-4877, FAX 032-560-2794)			

### ※ 유의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등록된 자동차, 즉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6 - 369호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68 및 1-81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1류68 및 중로1류81호선, 사업명:중로1-68호선 및 1-81호선 도로개설공사 (미개설구간)】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3. 14.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1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도로(중로1류68호선 및 중로1류81호선)
  - 명칭 : 중로1-68호선 및 중로1-81호선 도로개설공사(미개설구간)
3. 사업의 규모
  - 중1-68호선 : L=141.0m, B=20m, A=2,402.4m<sup>2</sup>
  - 중1-81호선 : L=562.5m, B=15m, A=9,940.6m<sup>2</sup>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비고
				총폭	금회	총연장	기시행	금회	잔여	
도로	중로	1	68	20	20	2,696 (2,004)	2,449 (1,757)	141 (141)	106 (106)	(서구연장)
도로	중로	1	81	20	15	1,190	627.5	562.5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동화엠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대원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33(가좌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가좌동	173-181	잡	2,081	2,081	동화엠평크 주식회사	서구 영곡로 133(가좌동)	-	-	-	
2	가좌동	173-545	잡	988	988	동화엠평크 주식회사	서구 영곡로 133(가좌동)	-	-	-	
3	가좌동	173-547	장	3,716	3,716	동화엠평크 주식회사	서구 영곡로 133(가좌동)	-	-	-	
4	가좌동	173-549	잡	5,211	5,211	동화엠평크 주식회사	서구 영곡로 133(가좌동)	-	-	-	
5	가좌동	173-550	잡	347	347	동화엠평크 주식회사	서구 영곡로 133(가좌동)	-	-	-	
계				12,343	12,343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3번 참조
8.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370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3. 14.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사회적기업 범위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총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 및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용어 및 개념 정의(안 제2조)
- 나.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3조)
- 다.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
- 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

- 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근거 신설(안 제17조부터 안 제24조)
- 바.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일자리지원과장)에게 제출 바랍니다.

- 전 화 : 560 - 2967, 팩 스 : 560 - 2731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과 이와 관련된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중앙부처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선정하고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 라.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 바.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및 유관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기업 등과 관련한 업무부서의 국장 및 복지업무 담당 국장
2. 학계 등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3. 사회적경제조직의 현장 활동가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제2항에 따른 제척신청과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 결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교육훈련 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구분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6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홍보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7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4.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 및 서비스의 판로지원
5.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6. 경영, 노무, 법률, 회계, 마케팅,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활동
7.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8. 참여기관 종사자 및 구민 교육·홍보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구 출연기관이나 제18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때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재위탁 여부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린다. 또한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 운영을 더 이상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과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조례에서 정한 사항,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 장비,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제21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6.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7. 구청장이 직영하고자 할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위탁의 해지)**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지원센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위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는 이 조례 제4조의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로 전환한 것으로 본다.